

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MSDS 번호:

## NIPPON VALQUA 7020

Date of issue: 2021-06-08

Revision date: 해당없음

Version: 1.0

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# 가. 제품명

- NIPPON VALQUA 7020

#### 나. 제품의 권리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자료없음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#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### 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Valqua, LTD
- 주소 : ThinkPark Tower 24F, 2-1-1 OSAKI, SHINAGAWA-KU, TOKYO 141-6024 JAPAN
- 전화번호 : +81-3-5434-7374
- 긴급 전화번호 : +81-3-5434-7374

##### 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미쓰이화학(주)
- 주소 : 본사)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동관 11층 우)04542, 공장)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305 우)59611
- 전화번호 : 061 - 688 - 5000
- 긴급 전화번호 : 061 - 688 - 5000

#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2
- 발암성 : 구분1A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3(호흡기 자극)

#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# ○ 그림문자



##### ○ 신호어

- 위험

###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H335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

##### ○ 예방조치문구

###### 1)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P261 분진/흄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- P280 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를(을) 착용하시오.

###### 2) 대응
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: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: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21 응급처치(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로 이동,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할지에 대하여 의료진의 조언을 구함)를 하시오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62+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.

### 3) 저장

- P403+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.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.
-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.

### 4) 폐기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시오.

## 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- 자료없음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(POLYTETRAFLUOROETHYLENE)	자료없음	9002-84-0 / KE-33429	50 ~ 60
석영	유리 규산	14808-60-7 / KE-29983	30 ~ 40

### 4. 응급조치 요령

#### 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####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(충분히) 세탁하시오
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환자를 씻길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시오.

#### 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.

#### 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하지 마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, 조언을 구하시오.

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소화제, 이산화탄소, 일반 포말소화제, 물 분무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.

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암을 일으킬 수 있음
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
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.
- 소방관은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와 보호복을 착용하시오.

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누출지 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
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
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은 적당한 용기에 쓸어 담고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분진누출 :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수성 천으로 덮어서 물과 접촉을 피하시오.

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분진의 발생과 축적을 최소화하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국소배기 및 전체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.
- 취급후에는 손을 자주 씻고 입을 헹구시오.

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
-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보관하시오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#### ○ 국내노출기준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TWA : 0.05 mg/m<sup>3</sup>

#### ○ ACGIH노출기준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TWA 0.025 mg/m<sup>3</sup>, Respirable particulate matter

#### ○ 생물학적 노출기준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 를 권장함

### 다. 개인 보호구

#### ○ 호흡기 보호

-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고효율 미립자 여과재)
- 미지능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- 분진, 미스트, 흄용 호흡보호구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(분진, 미스트, 흄용 여과재)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.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
#### ○ 눈 보호
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
#### ○ 손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
#### ○ 신체 보호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고체
- 색	갈색
나. 냄새	무취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자료없음
마. 녹는점/어는점	자료없음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자료없음
사. 인화점	자료없음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없음
카. 증기압	자료없음
타. 용해도	물에 녹지 않음
파. 증기밀도	자료없음
하. 비중	2.2~2.4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없음
너. 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
러. 점도	자료없음
머. 분자량	자료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가열 또는 연소시 분해하여 불화수소 등의 독성 흙을 발생할 수 있음.

### 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- 고온, 가열, 열원, 화염 조건을 피하시오.

### 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###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열분해 생성물로 입자상 물질 및 독성 부식성이 강한 증기가 발생함. (HF, 불화카르보닐, 모노머 등)
- 열분해 생성물은 온도나 조건에 따라 달라짐.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#### ○ (호흡기)

-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
#### ○ (경구)

- 자료없음

#### ○ (눈·피부)

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###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#### ○ 급성 독성

##### \* 경구 독성

- 제품 (ATEmix) : 자료없음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# \* 경피 독성

- 제품 (ATEmix) : 자료없음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# \* 흡입 독성

- 제품 (ATEmix) : 자료없음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 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피부에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(KOSHA)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 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눈에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(KOSHA)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 ○ 호흡기 과민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 ○ 피부 과민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#### ○ 발암성

- \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**IARC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Group 3
- [석영] : Group 1

\* **OSHA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**ACGIH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A2

\* **NTP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K

\* **EU CLP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생체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 (NITE)

○ **생식독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○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흡입시 기도를 자극함 (KOSHA)
- [석영] : 사람을 이용한 급성흡입독성 시험결과, 호흡기계에 영향이 나타남 (NITE)

○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사람을 이용한 반복독성 시험 결과, 호흡기계, 신장에 영향이 나타남. 발암성 영향으로 본 항목에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(NITE)

○ **흡인 유해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○ **고용노동부고시**

\* **발암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발암성 1A

\*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**생식독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**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**

**가. 생태독성**

○ **어류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○ **갑각류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○ **조류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**나. 잔류성 및 분해성**

○ 잔류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○ 분해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**다. 생물 농축성**

○ 생물 농축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○ 생분해성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**라. 토양 이동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**마. 오존층 유해성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**바. 기타 유해 영향**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자료없음
- [석영] : 자료없음

**13. 폐기 시 주의사항**

가. 폐기방법

- 소각 처리할 것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할 것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가. 유엔번호(IMDG CODE/IATA DGR)

- 해당없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

- 해당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

-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

-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
## 15. 법적 규제현황

###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#### ○ 작업환경측정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해당됨 (0% 이상 함유한 석영, 광물성분진)

#### ○ 노출기준설정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해당됨 (석영)

#### ○ 관리대상유해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해당됨 (0% 이상 함유한 석영, 광물성분진)

#### ○ 제조등급지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허가대상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PSM대상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허용기준설정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 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#### ○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413

#### ○ 중점관리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CMR

#### ○ 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성) 및 CMR 우려 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 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#### ○ 유독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사고대비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제한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#### ○ 허가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금지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**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**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.

**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**

○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EU 분류 정보

\* 확정분류 결과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미국 관리 정보

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
- [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(POLYTETRAFLUOROETHYLENE)] : 해당없음
- [석영] : 해당없음

**16. 그 밖의 참고사항**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CHA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21-06-08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